

취업지원대상자(국가유공자 등)

(전형별 만점의 5%~10% 가산점부여)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4.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
5.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장애인 대상자

(전형별 만점의 5% 가산점부여)

1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

⇒ 응시자는 본인의 가점이 법령에 따라 만점의 5%인지 10%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할 것.

⇒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.